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의요구안

의안 번호	1133
----------	------

제출일자 : 2005. 9.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2005년 9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상의 범위 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2005년 8월 5일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관련 별표 6의 개정으로 1일 최고 1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개정되고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그 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법적 안정성,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하겠습니까. 끝.